

◇출입국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, 출국금지 기간 연장, 출국금지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하고,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체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
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노 무 현 ㉠

2007년12월21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 정 성 진
법무부장관

◎법률 제8727호
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11(위험운전치사상)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)를 운전하 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
및 주요내용

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,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으 나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, 이 법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,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 포

함)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행정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노 무 현 인

2007년12월21일

국무총리 한 덕 수

국무위원
법무부장관 정 성 진

●법률 제8728호

行刑法 전부개정법률

行刑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제1편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,

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형자”란 징역형·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
2. “미결수용자”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
3. “사형확정자”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.
4. “수용자”란 수형자·미결수용자·사형확정자,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·구치소 및 그 지소(이하 “교정시설”이라 한다)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(戒護)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인권의 존중)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.

제5조(차별금지)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용모 등 신체조건, 병력